

##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(안영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8. 10.

발의자 : 안영호, 김지근, 문희성,  
신성봉, 이명녀, 박채연

### 1. 제정이유

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7조~제8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
- 나.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~제4조

### 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인 가구”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2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관계 등과 단절된 1인 가구(이하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라 한다)를 말한다.
3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4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무연고 사망자”란 사망자 중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,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여 구청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포함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 범위)**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구청장은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
3.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
4. 성별, 연령,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6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
7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
8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대상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

1.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
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3. 동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복지기관,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**제8조(지원사업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2.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
3. 가스·화재·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
4.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
5.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
6. 반찬 등 식품 지원
7. 사물인터넷(IoT, Internet of Things)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
8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·연계 서비스
9.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
10.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
11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포상)**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」는 폐지 한다.

**제3조(일반적 경과 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